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2025년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 '24.2.13., 시행 '25.2.14.)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민간 건설공사 시행자가 시행하는 지표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일부로 포함되게 됨. 이렇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건설공사 시행자가 시행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정도의 산업재해가 조사 주체에 따라 행정제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그리고, 중대재해는 통상 발굴조사 과정에서 굴착갱 붕괴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위주의 지표조사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없음.

이에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지표조사는 제외하고 발굴조사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항제9호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발굴조사”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등록취소”를 “조사기관의 등록취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u>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1. ~ 8. (개정안과 같음) <u>9. 발굴조사</u> ----- ----- ----- ----- -----
1. ~ 8.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u>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조(<u>등록취소</u>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2조(<u>조사기관의 등록취소</u>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98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이기현 · 조인철 · 이재관
이병진 · 박희승 · 박민규
박해철 · 김준형 · 채현일
오세희 · 윤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2025년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민간 건설공사 시행자가 시행하는 지표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일부로 포함되게 되어, 같은 정도의 산업재해가 조사 주체에 따라 행정제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그리고, 중대재해는 통상 발굴조사 과정에서 굴착갱 붕괴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위주의 지표조사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없음.

이에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지표조사는 제외하고 발굴조사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